

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『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『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4월 10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이유

-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비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비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정비기금의 사용용도에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함(안 제45조제4항제11호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(18:00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45, 팩스 032-440-8766, 이메일 : adiosever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사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 고
○ 주 소 :			
○ 성 명 :			
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4항제9호 중 “그 밖에 원활”을 “원활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~ ③ (생략)	제4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3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사용용도 중 법 제82조제3항제1호 라목에서 “그 밖에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<u>그 밖에</u>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민교육 지원 및 주거환경정책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	9. <u>원활</u> ----- ----- -----
10. (생략)	10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1. <u>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</u>
⑤ ~ ⑦ (생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